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과세면제) ①-②(생략) (신설)	제2조(과세면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규정한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